

## 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08월 19일

농소3동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 조치 사항 직권 조치 일자
이 *문	이 *문 1964-12-18	울산광역시 북구 천곡길 (천곡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7-29
조 *경	조 *경 1985-04-09	울산광역시 북구 아랫마을길 (달천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7-29